

의안번호	2201921
의 퇴 인	조경태의원
회 답 일	2024. 8. 29.
추 계 번호	24B214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업의 여건과 동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8억 9,600만원, 2030년 17억 4,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5억 5,400만원(연평균 9억 1,1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등(안 제4조의4 신설)	1,896	310	303	297	1,748	4,554	911

주: 주요 축종(한우, 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별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 매년 일정 비율의 표본을 추출하여 추출하는 것으로 가정

(2026년 및 2030년) 전체 축산농가의 30%, (2027~2029년) 전체 축산농가의 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u>축산업을 발전시키고</u> 축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u>종합적인 시책</u>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u>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u>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u>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u>할 수 있음(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u>필요한 교육·홍보</u>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분야 <u>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u>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5항)	의무·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조의2 신설(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u>축산업진흥 기본계획</u>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한우, 돼지 등 <u>농림축산식품부령</u> 으로 정하는 <u>주요 축종</u> 별로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4조의3 신설(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u>시·도지사</u> 는 지역의 축산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u>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u> (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4조의4 신설(실태조사 등)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기본계획 및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u>축산업의 여건과 동향</u> 등에 관한 <u>실태조사</u> 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22조의2제1항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 등 축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활용하기 위하여 <u>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u> 을 <u>구축·운영</u>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31조의2 신설(가축의 생산·출하 안정사업)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한우, 돼지 등 <u>농림축산식품부령</u> 으로 정하는 <u>가축</u> 에 대하여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생산·출하 안정</u> 등에 필요한 사업을 <u>추진</u>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32조의4제2항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u>수급조절협의회</u>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u>자문에 응함</u> (제2항) 2. <u>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u> 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u>소고기, 돼지고기</u> 등 <u>농림축산식품부령</u> 으로 정하는 <u>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u> 을 위한 <u>다음 각 목의 대책</u> 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가. 품목별 적정 사육규모 나. 축산 자재 및 기술[가축개량·사양관리(알맞은 영양소를 공급하여 잘 자라고 생산을 잘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함. 이하 같음), 사료의 품질관리 등을 포함함]의 개발·보급 다. 축산분야 전문인력 육성·지원 라. 축산물 품질관리 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지원 바.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및 소비자 보호	의무규정
8	안 제32조의5 신설(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필요한 경우 한우·돼지 등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유통·소비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u>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u> 을 <u>구축·운영</u>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을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음</u> (제3항)	
9	안 제33조의5 신설(조사·연구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u>축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사업</u>을 수행할 수 있음(제1항) 1. 가축의 사양관리 지침 개발 2. 축산기술의 품질관리 및 평가 3. 축산기술의 보급 및 사후관리 4. 축산기술의 실용화 5. 축산기술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 6. 축산물의 가공·유통 기술 및 식육부산물(내장,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함)의 식용 또는 사료화 이용 기술 7. 도축·가공 기술 8. 그 밖에 축산기술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10	안 제33조의6 신설(수출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의 수출을 진흥하고 우리의 축산물 식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u>(제1항) 1.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2.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3.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4. 그 밖에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u>필요한 경비</u>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33조의7 신설(도축·가공장의 현대화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축·가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u>을 수립할 수 있음(제1항) 1. 도축·가공장의 축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 도축·가공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 도축·가공장의 위생 여건 개선 4. 그 밖에 도축·가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축·가공장 영업자 등에게 <u>필요한 자금</u>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33조의8 신설(축산물 민간비축 지원 및 방출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u>축산발전기금</u> 으로 축산물유통업자의 축산물 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3	안 제5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5항) 1.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u>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u>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동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업 발전 시책 수립·시행 및 사업비 지원, 대국민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4조의2 신설(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 말, 돼지, 닭 등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계획을 수립중으로, 개정안에 따른 축종별 종합계획 수립에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수립·시행중인 축종별 축산발전계획>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종</th><th>계획명(최근)</th><th>수립연도</th><th>수립예산(연구용역)</th></tr> </thead> <tbody> <tr> <td>소</td><td>(연구용역) 적정생산 및 환경친화적인 사육구조 구축 등을 통한 한우산업 발전방안 연구</td><td>2021</td><td>45</td></tr> </tbody> </table>	축종	계획명(최근)	수립연도	수립예산(연구용역)	소	(연구용역) 적정생산 및 환경친화적인 사육구조 구축 등을 통한 한우산업 발전방안 연구	2021	45
축종	계획명(최근)	수립연도	수립예산(연구용역)								
소	(연구용역) 적정생산 및 환경친화적인 사육구조 구축 등을 통한 한우산업 발전방안 연구	2021	45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종</th><th>계획명(최근)</th><th>수립연도</th><th>수립예산 (연구용역)</th></tr> </thead> <tbody> <tr> <td>말</td><td>2022~2026년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td><td>2022</td><td>170</td></tr> <tr> <td>닭, 오리, 돼지, 염소</td><td>2019~2023년 제2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5개년 계획</td><td>2019</td><td>90</td></tr> <tr> <td>양봉</td><td>2022~2026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td><td>2022</td><td>40</td></tr> </tbody>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축종	계획명(최근)	수립연도	수립예산 (연구용역)	말	2022~2026년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2022	170	닭, 오리, 돼지, 염소	2019~2023년 제2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5개년 계획	2019	90	양봉	2022~2026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2022	40
축종	계획명(최근)	수립연도	수립예산 (연구용역)																
말	2022~2026년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2022	170																
닭, 오리, 돼지, 염소	2019~2023년 제2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5개년 계획	2019	90																
양봉	2022~2026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2022	40																
3	안 제4조의3 신설 (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축산 농가수, 축산환경 등 축산업 실태가 상이하므로 지역축산업진흥시행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4	안 제4조의4 신설 (실태조사 등)	○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업 등 축산업 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추계																
5	안 제22조의2제1항(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업을 통해 시스템 관리·유지보수와 서비스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1)에 규정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임 <최근 3년간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축산물품질관리(3738-330)</td><td></td><td></td><td></td></tr> <tr> <td>—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td><td>1,148</td><td>1,148</td><td>1,148</td></tr> </tbody>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축산물품질관리(3738-330)				—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1,148	1,148	1,148				
사업명	2022	2023	2024																
축산물품질관리(3738-330)																			
—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1,148	1,148	1,148																
6	안 제31조의2 신설(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 돼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예를 들어 축종별 도축·출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음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소요} &= \sum_{i,j,t} (\text{축종별 도축·출하 장려금})_{i,j,t} \\ &= \sum_{i,j,t} (\text{축종별 지급두수} \times \text{지원단가} \\ &\quad \times \text{국비 지원율})_{i,j,t} \end{aligned}$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이때 t는 추계기간 5년, i는 축종(한우, 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 등), j는 지원금 종류(도축장려금, 출하장려금)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급대상 축종 및 지급두수, 축종별 지원단가, 국비 지원율 등 비용추계에 필요한 변수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최근 한우(암소) 및 돼지에 대한 도축수수료 및 출하 장려금 지급 사례는 [참고자료 1] 주요 축종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사례 참고 ※ 최근 4년(2020~2023년)간 한우, 돼지, 닭의 평균 도축수수료는 [참고자료 2] 주요 축종별 도축수수료 현황 참고
7	안 제32조의4제2항(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총 인원: 15명(공무원 3명, 민간위원 12명)/ · 위원장: 정경수 교수/ 임기: 2년/ · 최근 3년간 회의개최 횟수: ('21) 7회, ('22) 6회, ('23) 1회 · 주요 회의 내용: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등 · 5개 분과위원회 운영(한육우, 돼지, 닭고기, 산란계, 오리)
8	안 제32조의5 신설(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축종별로 축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축종별 정보시스템을 안 제22조의2에 따른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며, 해당 업무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구축 대상인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각 축산정보시스템의 ISP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업무위탁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재 운영중인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은 기관별로 고유목적에 따라 별도 관리·운영중인 축산농장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축산정책, 방역 및 환경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됨 －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이력정보), 지자체(축산업 허가·등록 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정보) 등 * (사례)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의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의 사육마릿수 정보를 결합하여 농장별 적정 사육밀도 관리 － 구축 기간: 2020.7.6.~2021.7.1.
13	안 제5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구축비(초기 구축비): 2,599백만원 * 서버 등 인프라 비용: 820백만원, 개발비: 1,779백만원 ** 개발비에는 감리(83백만원), PMO용역(220백만원), 개인 정보 영향평가(63백만원) 포함됨 <최근 3년간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 <td>축산물품질관리(3738-330)</td><td>1,148</td><td>1,148</td><td>1,148</td></tr> <tr> <td>–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td><td></td><td></td><td></td></tr>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축산물품질관리(3738-330)	1,148	1,148	1,148	–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업명	2022	2023	2024												
축산물품질관리(3738-330)	1,148	1,148	1,148												
–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9	안 제33조의5 신설(조사·연구사업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2025 축산현안대응산업화 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가축 생산 효율성 증진, 축산 시설·환경개선 등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중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3] 2025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 개요 참고 <축산분야 연구개발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 <td>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 기술개발(R&D) (2280-388)</td><td>11,470</td><td>10,579</td><td>5,670</td></tr>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 기술개발(R&D) (2280-388)	11,470	10,579	5,670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 기술개발(R&D) (2280-388)	11,470	10,579	5,670												
10	안 제33조의6 신설(수출 진흥)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해외시장진출 사업을 통해 해외정보조사·전파, 우수농식품콜드체인구축, 우수농식품판로개척, 외식산업수출지원가축 등을 수행중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 <td>농식품해외시장진출 (2835-304)</td><td>44,635</td><td>44,973</td><td>49,330</td></tr>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농식품해외시장진출 (2835-304)	44,635	44,973	49,330				
사업명	2022	2023	2024												
농식품해외시장진출 (2835-304)	44,635	44,973	49,330												
11	안 제33조의7 신설(도축·가공장의 현대화 지원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을 통해 도축장, 가공장 등의 신축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용자, 이차보전)>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 <td>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td><td>119,000</td><td>119,000</td><td>119,000</td></tr>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119,000	119,000	119,000
사업명	2022	2023	2024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119,000	119,000	119,000								
12	안 제33조의8 신설(축산물 민간비축 지원 및 방출 명령)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축산물유통업자의 축산물 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축산 발전기금으로부터 선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축종별 축산물의 비축물량, 비축에 따른 가격 등 구체적 정보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축산 관련 실태조사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축산환경조사’²⁾ 실시중
- (주관기관)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조사)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 표본·전수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축산환경 개선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22년~)
 - (조사대상) 전국 시·군·구 주요 축종 축산농가(약 102천호)* 및 가축분뇨

1) 법 시행령 제14조의5(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구 축산환경실태조사

처리시설(약 916개소)

* '22년 전수조사(5년 주기), '23년 표본조사(16천호)

- (조사내용) ①축분뇨 관리현황, ②악취 관리현황, ③에너지 사용현황, ④기타(일반현황, 폐사축 처리, 소독·방역 등)

[표 2] 현행 축산환경조사 예산: 2022~2024년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2022	2023	2024(안)
가축분뇨처리지원 (3735-330)	축산환경관리원운영 (축산환경조사)	전국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현장여건을 반영한 축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에 활용	1,561	793	79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나. 실태조사 등(안 제4조의4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업의 여건과 동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항목은 현행 축산환경조사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는 축산농가의 구체적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개요) 축종별 축산농가(법인 포함) 대상 조사 모집단 구성 및 표본 설계

- (조사항목)

- 일반현황(경영주, 경영체, 유형, 품목, 소재지 등)
- 시설현황(유형, 형태, 규모, 설비 등)
- 경영현황(생산량, 투입인력, 비용, 수익, 판매형태 등)
- 에너지 사용 등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조사항목은 기존 기초자료 활용을 통해 최소화할 계획

- (조사대상 및 주기) 주요 축종(한우, 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별 전체 농장 98,985³⁾ 농장(가구)에 대해 매년 일정 비율의 표본을 추출하여 추출하는 것으로 가정(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2026년 및 2030년⁴⁾: 전체 축산농가의 30%
 - 2027~2029년: 전체 축산농가의 5%
 - 이때, 최근 6년(2019~2024년)간 전체 축산농가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추계 기간 동안 전체 98,985농장('24년 6월 기준)에 연평균 증가율 -2.0% 적용

[표 3] 축종별 사육농가 수 현황: 2019~2024년

(2024년 2분기 기준, 단위: 농장(가구))

축종별 사육농가수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19~’24)
한·육우	94,007	93,178	93,845	91,592	87,145	84,180	-2.2%
젓소	6,168	6,106	6,105	5,888	5,553	5,505	-2.2%
돼지	6,133	6,078	5,942	5,695	5,634	5,667	-1.6%
닭	2,784	2,845	2,842	2,694	2,815	3,110	2.2%
오리	486	449	379	338	370	523	1.5%
합계	109,578	108,656	109,113	106,207	101,517	98,985	-2.0%

주: 2019~2023년: 각 연도 12월 1일 기준, 2024년: 2분기(6월 1일 기준, 잠정치)

자료: 1.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4/4분기(12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2.1.20.

2. 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4/4분기(12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3.1.20.

3.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4/4분기(12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4.1.19.

4. 통계청 보도자료, 2024년 2/4분기(6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4.7.19.

- (조사단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라 1농장(가구)당 실태조사 단가는 66,500원으로 가정
 - 실태조사는 현행 '축산환경조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므로 1개 농장당 조사비용은 통상 13만 3천원⁵⁾의 50%로 산정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실태조사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4년 2/4분기(6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4.7.19.)

4) 개정안은 축산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30년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1년 전에 전체의 30% 규모를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

5)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농장의 경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조사보다 난도가 높은 편으로 1개 농장당 13만 3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추계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업의 여건과 동향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5억 5,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축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축산농가 수 (A, 농가)	95,040	93,127	91,253	89,416	87,616	—	—
표본 비율(B)	30%	5%	5%	5%	30%	—	—
대상 농가 수 (C=A×B, 농가)	28,512	4,656	4,563	4,471	26,285	—	—
실태조사 단가 (D, 원/농가)	66,500	66,500	66,500	66,500	66,500	—	—
추가재정소요 (E=C×D, 백만원)	1,896	310	303	297	1,748	4,554	911

주: 주요 축종(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별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 매년 일정 비율의 표본을 추출하여 추출하는 것으로 가정

(2026년 및 2030년) 전체 축산농가의 30%, (2027~2029년) 전체 축산농가의 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주요 축종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도축장려금: 2022년 추석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

- 재원: 국비 100%
- 지원대상: (한우) 암소, (돼지) 전체 도축마릿수
- 지원내용: 추석 성수기(8.22.~9.8.)에 도축한 한우 암소 및 돼지에 도축수수료의 일부 지원
- 지원단가: 한우 103,000원, 돼지 10,300원
- * 지원단가에 위탁수수료(3%) 포함

<'22년 추석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 내역>

구분	지원규모 (A, 천마리)	지원단가* (B, 원/마리)	지급액 (A×B, 백만원)
한우 암소	22	103,000	2,262
돼지	936	10,300	9,642
합계	958	—	11,903

* 지원단가에 위탁수수료(3%) 포함

□ 출하장려금: 한우 암소 비육지원('21~)

- 재원: 한우자조금(국비 포함), 농협 자체자금
- 지원대상: 일정 조건을 충족한 미경산우 및 경산우
- 지원내용: 일정 기한 내에 한우 암소를 비육하여 도축하면 지원금 및 보증싸수소 정액 지원(미경산우 20만원, 경산우 18만원(자조금 15+농협 3))

<한우 암소 비육지원 내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만)>

구분	지원규모 (A, 천 마리)	지원단가 (B, 원/마리)	지급액 (A×B, 백만원)
미경산우	15	200,000	3,000
경산우	20	180,000	3,600
합계	35	—	6,600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한우 출하장려금 지급사례

- 출하장려금 지급사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육질 등급별 출하장려금(한우 1두당 8~30만원) 지급사례

<지방자치단체 한우 출하장려금 지급사례>

(단위: 천원/두)

지자체	사업명	사업시기	지원대상	지급조건 (등급판정 등)		출하장려금 지급 단가
충북	청풍명월한우 브랜드출하 장려 금	2024	충북한우광역브랜드 청 풍명월 참여농가	혈통등록우		200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2024	충남한우광역브랜드 토 바우 참여농가	토바우	1++	200
					1+	120
					1	80
경북	광역한우브랜드 활성화	2024	경북한우광역브랜드 참 품한우 참여농가	수도권 출하 (경기, 충남, 충북)		80
경남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2024	경남한우공동브랜드 한 우지에 출하농가	한우지 예	1++	300
					1+	200
제주	고품질 축산물 우 수등급 장려금 지 원	2024	서귀포시 한우 출하농가	서귀포 출하	1++	40
					1+	20
강원 원주	고급육 출하 장려 금	2024	원주한우브랜드 치악산 참여농가	치악산	1++	1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홈페이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자료 2] 주요 축종별 도축수수료 현황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출자료)

□ 최근 4년간 평균 도축수수료(도살처리수수료)

축종	구분		도매시장	농협공판장	민영도축장
소(한우)	2020년	암	140,193	136,748	157,321
		수	144,332	130,082	157,005
		거세	140,193	136,748	158,251
		평균	141,573	134,526	157,526
	2021년	암	139,201	138,421	162,874
		수	139,201	138,421	161,926
		거세	139,201	138,421	162,222
		평균	139,201	138,421	162,341
	2022년	암	161,620	154,667	170,070
		수	157,620	149,600	166,223
		거세	157,620	151,333	168,227
		평균	158,953	151,867	168,173
	2023년	암	159,050	152,185	168,386
		수	159,050	148,783	168,234
		거세	159,050	152,185	168,933
		평균	159,050	151,051	168,518
돼지	2020년	평균	18,653	19,980	17,733
	2021년	평균	18,584	20,434	17,630
	2022년	평균	19,225	19,562	19,057
	2023년	평균	22,900	19,956	19,055
축종	구분		계열업체		
닭(육계, 도계비)	2020년	평균	308		
	2021년	평균	308		
	2022년	평균	304		
	2023년	평균	326		

주: 닭은 계열업체 운영 도계장을 기준으로 도계비 산출

[참고자료 3] 2025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2025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축산 분야 현안문제 해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의 대응 기반 구축
- 사업기간: '21~'25(5년)
- 지원조건: 출연 100%(대기업 5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5% 이상 매칭)
- 사업시행주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실집행 주체: 기업, 영농조합법인, 대학, 연구소 등
- 사업추진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제35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예산

<축산 관련 기술 연구·개발·보급 예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가축생산 효율성 증진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종별 사료(첨가제 등), 수입 사료원료 대체 및 고품질 사양관리 소재 등 연구개발 지원	3,410	4,734	3,913	1,332
	축산시설 환경개선	시설자재 국산화 및 맞춤형 자재 개발, 한국형 축산에너지 절감모델, 축산환경 개선(자원화, 악취) 등 연구개발 지원	4,141	6,736	6,666	4,338